

제42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1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28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2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4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한국예술종합학교 현안 관련 보고
-

상정된 안건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3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3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3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4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4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4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4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4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4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4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4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4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4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4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4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4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4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4
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4
2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4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4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4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4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4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4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4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4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4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4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4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4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4
4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4
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5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43. 한국예술종합학교 현안 관련 보고	9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합격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2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4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9시35분)

○**위원장 김교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임오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0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춘석·강유정·조계원·박수영·김준혁·조인철·구자근·김선교·조승래·민형배·박수현·김재원·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둘째,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여덟째,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종오·조계원·강대식·임오경·김교홍(2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등을 위한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형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

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춘석·강유정·조계원·박수영·민형배·김준혁·조인철·김선교·장철민·조승래·임오경·김재원·정연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앞서 보고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과 같이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고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등을 규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출국납부금 납부 후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신설하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출국납부금의 기금 귀속, 환급 업무 절차 및 필요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법률안 안건 수로 보면 많지만 크게 보면 공연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암표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법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법은 공연 관련 티켓의 암표 방지이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관련 티켓의 암표 방지인데 어쨌거나 관람의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법률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법사위 통과, 나중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더 조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실효성이 있게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

암표 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거나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특히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또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각각 별개로 신고기관을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과 공연 다 통틀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고 또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본질적으로는 서로 암표 행위가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법이 통과된 이후에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또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큰 계획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는 대로 저희 문체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상의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1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4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2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박정하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및 저작권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의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5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문제인 티켓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규제수단과 단속체계를 보완하고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접속 차단을 가능케 하여 K-콘텐츠의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장님, 박정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 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소속기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43. 한국예술종합학교 현안 관련 보고

(09시49분)

○위원장 김교홍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 한국예술종합학교 현안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합격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현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면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나오셔서 이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학교폭력 학생이 저희 학교에 합격한 일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사건의 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18일에 시작된 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학폭 관련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민원이 있음을 지난 11월 13일에 보고받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해 보니 올해 3월 31일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될 당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사항이 입학시험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입시에 적용하고 있음에도 국립학교인 본교가 이를 간과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합격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이 학생 이외에는 합격자 중 학폭 해당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이 문제를 본교 입학정책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입학 과정에서 사회적·도덕적 통념에 위배되거나 교육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입학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입학허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4일 위원장인 교학처장과 교내 교수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입학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를 엄정히 심의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을 생각할 때 본교는 국립학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하기 위해 학교폭력 학생의 입학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향후 입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총장님, 학폭 사실이 있는 최종합격자가 나왔다 이거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데 중요한 대목은 이게 실수인가, 학교의 정책인가, 아니면 의도·고의인가, 어느 쪽입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명백한 학교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실수라는 뜻인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아닙니다. 실수라기보다도 3월 달에 그리고 4월 2일 날 공고가 나갈 때 다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입시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의 실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총장님이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당시에 제가 총장직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저희들의 불찰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민형배 위원 저는 불찰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누군가 고의로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지점이거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파악하기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민형배 위원 철저하게 챙기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총장님, 이번에 새로 총장 되셔 가지고 올해 입학 사정 기준 마련할 때는 직접적으로 총장으로서의 책임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사후적 조치인데 교육부 산하의 여러 학교들은 학폭 대상자에 대해서 입학 사정 시 여러 가지 감점 규정이나 배제 규정을 둔 학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기준이 획일적이지 않고 보니까 아주 다양하거든요. 사전적으로 사정 기준이 학교폭력 대상자한테 1호 조치부터 9호 조치까지 학폭의 정도에 따라서 처

별 규정이 나눠져 있는데 이번 대상자는 딱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으로 1호 조치 대상자부터 9호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점이 있다, 아니면 아예 배제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명확한데 이거를 사후적인 잣대로 들이댔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그러니까 어떤 잣대를 들이대냐에 따라서 입학이 그대로 허용될 수도 있고 입학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계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여러 대학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학교마다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게 하는 학교는 5%, 심지어 3%, 그러나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학교는 20%.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는 학생처럼 학폭 4호에 관련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입학정책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교육 목표와 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든지 기타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둬서 신중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입학 허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저희가 엄격한 제도를 미리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입학정책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후 법률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한예종 학폭자 합격 논란과 관련해서 문체부의 입장이 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사회적 분위기가 학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다른 학교들, 교육부 산하는 그런 조치들을 입학 사정에 넣었는데요. 저희 한예종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 저도 뒤늦게 파악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 장관님 답변이 굉장히 안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의 태도가 이러시니까 문체부 관계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해서 대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보면 문체부 관계자 입장이 그래요. 장관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밑의 사람들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한예종은 문체부 소속 국립대학이잖아요. 설치 근거도, 예산도, 평가도, 기관장 인사도 문체부가 모두 관여하고 있는데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자율성을 둔다, 이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앞으로 문체부 차원에서 어떻게 후속 대처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대로 들여다보고…… 관리 감독 체계를 어떻게 갖추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적으로 둔다라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편장완 총장님!**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조은희 위원** 지금 잘못하신 거지요? 국민들 앞에 사과해 주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희 학교가, 본교가 이번 2026학년도 입시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지켜야 될 사회적 통념과 가치에 따르지 못한 입학 제도의 부문적인 실수를, 굉장히 명백하게 잘못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물론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종감에서도 한예종 교수들이 자기 이름으로 개인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시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A 교수가 본인 개인 무용단 이름을 걸고 학생들을 동원시켰는데 이게 본인이 개인 실적도 쌓고 돈벌이하도록 한예종이 방치한 거예요.

저는 문체부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 인사에서 10월 16일 자로 이 A 교수가 한예종 교학1부처장이에요. 교학1부처장은 뭐 하는 데입니까? 한예종 입시를 전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이게 제대로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이것은 그 부처장님이 당시에는 그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고요. 학교 전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본인도 동의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게요 학폭 가해자를 입학시킨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A 교수 가 학생들을 자기 개인 무용단에 동원시키고 그다음에 개인 실적 쌓고 돈벌이한 이 교수를 입시를 전담하고 있는 부처장으로 임명해 놓고 지금 영뚱한 해명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니까 학폭 가해자를 입학시키고 뒤늦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예종 어떻게 믿습니까?

장관님, 한예종을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아무리 지적해도 똑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문체부 감사 중입니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총장님, 한예종이 지난해 12월 3일 날 밤에 학생들을 소격 조치시켰던 것 아시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계속해서 내란의 그 밤에도 한예종이 가장 적극적으로 내란세력들과 함께 호흡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 이후에 지난 10월 달에 총장님이 들어가면서 한예종의 새로운 쇄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조은희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교수들이 입학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데 간부로 앉아 있는 부분도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번 학폭, 모집요강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하겠다 말씀하시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예종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말……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상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른 위원님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저는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전력자 합격 사태의 근본 원인을 문체부의 교육행정 체계에서 짚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예종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학생을 아무 감점 없이 합격을 시켰는데요. 4호 처분은 사회봉사 단계로 중대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생활기록부에 명확히 기재된 이 사실을 입시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심사 누락을 넘어서 대학의 공정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정순신 사태 이후 2023년에 전국대학총장협의회가 학폭 가해자에 대한 대입 감점과 기록 보존 강화를 공식 선언했거든요. 교육부 역시 2025학년도부터 주요 대학 전형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에 필수 반영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즉 이 사안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준 역시 명확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한예종은 입시 과정에서 문체부 소속 대학이다라는 이유로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명백히 기록된 학폭 징계 사실을 확인하고도 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은 채 합격을 결정하게 된 거지요. 이런 판단과 해명이 문체부가 교육행정 공백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이렇게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문체부가 교육행정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교육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국립전통예술 중·고에서도 교육행정 미숙으로 여러 문제가 반복됐었고 그와 동일한 구조적 한계가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는 건데 특정 학교의 일탈이 아니라 문체부 교육행정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고자 합니다.

장관님, 앞으로 한예종을 포함한 문체부 소관 예술교육기관의 교육행정 안정화를 위해서 교육부와의 협업체계 구축이나 인적 교류 또는 교육행정 도입 이런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종오 위원** 이름도 좀 불러 주세요.

저는 한예종 총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점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통 몇 점 정도가 감점됩니까? 한 50점 정도 됩니까, 이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게 학교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총점이 1000점, 600점, 700점 다 다르더라고요.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쉽게 생각하면 퍼센티지로 많이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12월 4일 날 최종 결론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사자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 소송을 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것은 아직…… 불허가 됐다는 상황을 놓고 가정했을 때 얘기인 것 같고……

○**진종오 위원** 가정이긴 한데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할 예상이신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다면 소송 비용이 발생되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12월 4일 날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장인 제가 또 저희 학교 측에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학폭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순간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타당성을 지켜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공정한 재심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진종오 위원** 집중하시는 것은, 충분히 앞서도 얘기하신 것은 이해하고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거나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철저히 원인 규명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밝히셔서 이것은 구상권 청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시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진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편장완 총장님!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임오경 위원 아까 보고하시면서 말씀 중에 수험생이 시험에 합격을 했더라도 사회적·도덕적 통념에 위배되거나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정책위원회에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게 ‘사회적·도덕적 통념에 위배되거나’ 이 부분이 입시요강이나 혹시 규정에 들어가 있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 지침이나 조례 이런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확하게 그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정확하게 들어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규정화돼서 저희 학교 문구에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현재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포괄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그게 입시에 관련된 모든 비리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기타 입시에 대한 모든 관련 사항이라고 입학정책 위에 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장관님께 제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권고나 지침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까지 계속 있었을 텐데 이러한 입시비리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문체부는 국립대…… 지금 한예종 같은 경우는 문체부 소관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내려온 권고나 지침을 우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소관인, 문체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문체부 위원으로서 간사를 맡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진짜 문체부에서 이런 사고가 터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결과를 통보도 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에 있어서 문체부장관님이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합격 통보는 해 줬는데 입학 허가 통보는 언제 하게 되어 있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희가 입학 허가에 대한 마지막 통보는 입학 허가 결정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입학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임오경 위원** 입학 허가는 언제 통보하게 돼 있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최종 결정이 되고 등록금까지.....

○**임오경 위원** 내년인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내년에 합니다.

○**임오경 위원** 입학 허가 통보를 내년에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임오경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예종 같은 경우는 국립대로서 문체부 소관인 만큼 진짜 장관님 이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분들이 더 엄중한 잣대로 그렇게 관리 감독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교육부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한예종이 뒤처지지 않도록, 항상 앞서 나가는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문체부 소관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율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모호한 말씀들을 내세우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국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도 철저히 챙기고 교육부와도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또 질의하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이번 사건을 정말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학교폭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이게 2023년 8월 자료예요. 여기에 총장님께서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점수로 반영할지, 등급으로 반영할지, 비율로 반영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

그런데 2023년 8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예종에서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입학 사정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가를 하고 일단은 학생에게 합격 통지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시 12월 4일 날 회의를 통해서, 입학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100% 소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될 경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만큼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학교 폭력의 경각심을 세우고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전화위복의 계기다. 이런 부분은 잘 새겨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 마련도 바로,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위원님 말씀 잘 각인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조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조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총장님, 잠깐 여쭐게요.

결국에는 입학정책위원회의 4일 날 회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입학정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지금 구성이 교학처장님하고요. 교학처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교학부처장 그리고 각 원의 부원장님 그리고 교내 교수님 두 분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학내가 주로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학내가 좀 더 많지요.

○**박정하 위원** 주로 많이 계시고 외부 전문가 두 분 계시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하여튼 사회적·도덕적 통념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을 텐데 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과하고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런데 총장님, 이게 단순히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문체부 산하라 그런 지침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에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전달됐다고,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왜 카이스트는 잘돼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는 그게 아주 정상, 오히려 카이스트가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남의 학교 얘기해서 뭐한데 카이스트는 전형이 잘되잖아요. 거기도 교육부 산하가 아니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문제는 사회 통념이나…… 교육부에서 23년도에 시행 권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의 지침을 다 받았을 거예요, 한예종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국립대학교인데 안 줄 리가 있겠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그걸 그냥 지나치듯이 했거나 아니면 의도성 있게 했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엄정한 기준, 잣대로 입학 사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예종을 보는 대국민 시각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교홍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위원장 김교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오늘 한예종 총장님의 보고가 있으셨는데 제가 유산청장님께 질문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끝나신 다음에?

○위원장 김교홍 뭐 끝나고? 지금 끝났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기현 위원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유산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일 날 엘에나니 신임 유네스코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 면담이 있으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종묘 개발과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은 지난번 외교문서로 온 것도 결국은 세계유산센터장께서 우리나라에서 제삼자 민원에 의해서 시작됐고 또 23년도 민원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묘에 특히 관심이 많이 있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가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내년에 부산에서 있을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사무총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그분이 참석하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종묘 건은 이미 세계유산센터장께서 사무총장한테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세계유산위원회 이야기하고 저희들의 국가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말미에 종묘 건을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래서 현재 일어난 20년 동안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여러 가지로 보존과 그다음에 개발이라는…… 균형적인 조화 속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을 믿어 달라 그랬더니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세계유산센터장과의 단독 면담을 개인적으로 따로 했습니다. 센터장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강한 유감을 말씀하시면서도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 그리고 또 지금 종묘지구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고 그리고 나서 현재 많은 시민과 그다음에 여러 분들의 의견이 결국은 종묘를 함께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런데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다 그래 놓고 왜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위원장 김교홍 상임위에서, 나중에 전체회의 때 질의하시도록 하시지요.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든가요.

○이기현 위원 제가 사실은 시간을 얻어서 하려고 의사진행발언으로 했는데 바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해도 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저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현 위원 그러면 1분만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나한테?

○이기현 위원 아니, 제가.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이건……

○진종오 위원 이건 조금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향후에도…… 나는 의사진행발언을 나한테 하는 줄 알고 저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회의 할 때마다 직접 질문해 버리면 회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기회를 주신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교홍 예.

○박정하 위원 오늘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는 더 안 하겠는데 그 전에 종감 때 종묘 관련해서 지금 막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유네스코에 누가, 제삼자라고 표현되는 누가 질의를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변이 왔고 그게 어떻게 외교문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도착하지 않고 있고 지금 청장이 일방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청장께 요청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현안질의 시간을 잡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장이 그런 자료는 제출치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본인이 경험했던 얘기만을 하는 건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장님, 국감 때 나왔던 자료 요청 있잖아요? 그것 그때 드린다고 했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자료 요청은 열람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교홍 그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국가유산청장 허민 열람을 드렸고 외교부……

○위원장 김교홍 열람을 드린 거예요, 자료를 드린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열람을 하고……

○박정하 위원 저희 방에서 받은 건 영문만 열람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게 요청된 과정, 어떤 자료가 유네스코에 갔는지, 누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게 국내로 들어올 때 왜 그 삼자가 받지 않고 외교부를 통해서 받아서 이게 외교문서화됐는지 이 과정을 다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위원장 김교홍 그 자료를 드리세요,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조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조계원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 예산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예결위, 지역활동 등으로 눈코 뜰 시간을 내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신 것 잘 압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할 수 있도록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핵심적 권한이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꼽힙니다.

내일이면 문체위 종합감사가 끝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 2025년 문체위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14일 문체부에 대한 감사와 29일의 종합감사를 통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 및 김건희와 노관규 순천시장 간의 예산을 둘러싼 검은 거래 의혹, 탈법적 예산집행과 문체부의 관리 감독 소홀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노관규 시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증으로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야 간사 간에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을 통해 박탈된 국정감사권을, 87년 6월 시민항쟁과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어렵게 부활시킨 국정감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회와 위원회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국정감사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노관규 순천시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 건과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의 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셔서 감사원 감사와 고발 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정하 손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옥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첨가 위원(3인)

김윤덕 박수현 배현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정책기획관 이정은

예술정책관 이용신

저작권국장 정향미

체육국장 이선영

관광정책국장직무대리 박미경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편장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2)

11월 17일 회부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0)

11월 18일 회부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42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7)

이상 6건 11월 21일 회부됨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2)

이상 2건 11월 24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중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6)

이상 2건 11월 26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3)

이상 2건 11월 2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5)

1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제출일	소관부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6호	2025. 10. 23.	2025.11.1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18호	2025. 10. 21.	2025.11.12.	문화체육관광부